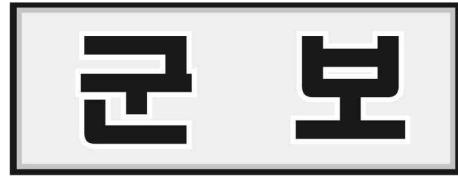


순창을 더+ 새롭게
군민을 더+ 행복하게

군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632호 2026. 9. 15.

고 시

- 순창군 고시 제2026-171호 순창군 일반 및 공동주택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무
처리 지침 일부개정 1
- 순창군 고시 제2026-173호 인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9
- 순창군 고시 제2026-174호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10

공 고

- 순창군 공고 제2026-39호 순창군 소득개발시험포 경영실습교육농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11
- 순창군 공고 제2026-870호 매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19
- 순창군 공고 제2026-894호 순창군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 순창군 공고 제2026-895호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8
- 순창군 공고 제2026-896호 순창군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34
- 순창군 공고 제2026-921호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9
- 순창군 공고 제2026-923호 순창군 미래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44
- 순창군 공고 제2026-926호 순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9

회								
람								

발 행 : 순창군 (편집 기획예산실)

순창군 고시 제2026-171호

순창군 일반 및 공동주택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

순창군 일반 및 공동주택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 일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순 창 군 수

1. 개정 이유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위탁수수료가 지침 제정(2015.10.15.)부터 동결되
어 위탁수수료를 인상하여 원활한 검침 업무수행을 위해 일부 내용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수수료 인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항)

- 검침업무 위탁수수료 ┐ 일반주택 : 검침전 1개당 750원 ⇒ 1,000원
- └ 공동주택 : 검침전 1개당 400원 ⇒ 500원
- 월별 교통통보상금 : 30,000원에서 50,000원 ⇒ 50,000원에서 100,000원

나. 순창군 조직개편 사항 반영(안 제6조 및 안 제11조)

붙임 「순창군 일반 및 공동주택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 지침안 각1부.
끝.

순창군 일반 및 공동주택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 일부개정 지침안

순창군 일반 및 공동주택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무처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750원” 을 “1,000원” 으로, “400원” 을 “500원” 으로, “30,000원부터 50,000원” 을 “50,000원부터 100,000원” 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수도과” 를 “상하수도과” 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중 “환경수도과” 를 “상하수도과” 로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위탁수수료는 월별로 위탁검침원의 업무처리건수를 검수하여 위탁수수료를 정산 지급한다. 일반주택은 검침전 1개당 <u>750원</u>, 공동주택은 검침전 1개당 <u>400원</u>으로 한다. 또한 공동 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옥내에 설치된 곳은 일반주택의 검침수수료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침수수료 외에 검침구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월 <u>30,000원부터 50,000원</u>까지의 교통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제6조(검침구역별 조 편성 운영) ① (생 략) ② 조장은 조원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로 조별 검침구역 내에 업무공백을 사전 예방하고 긴급사유 발생시 <u>환경수도과</u>에 통보하고 조원의 비상연락을 책임진다. 제11조(계약의 해약) ① (생 략)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u>환경수도과</u>의 기구 개편, 제도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형편이 있는 때 6. · 7. (생 략) ③ (생 략)	제5조(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_____ _____ _____. _____ <u>1,000원</u> _____ <u>500원</u>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50,000원부터 100,000원</u> _____ _____.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검침구역별 조 편성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 <u>상하수도과</u> _____ _____. 제11조(계약의 해약)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1. ~ 4. (현행과 같음) 5. <u>상하수도과</u> _____ _____ 6.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순창군 일반 및 공동주택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

(제정) 2015.10.15 예규 제8호(일부개정) 2023.04.28 예규 제2801호 (조례 2801호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제4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 ① 수도계량기 검침 및 점검업무

1. 일반 및 공동주택의 상수도 계량기를 정기 검침일에 검침하여 지침 및 사용량을 계량기 검침부에 기록하여 순창군수(이하 "갑"이라 함)에게 제출하는 업무
2. 수도계량기 정상 여부 점검업무(불 회전, 문자판불명, 침 탈락, 유리파손, 동파 등 이상이 있을 때는 "갑"에게 즉시 통지하는 업무)

② 고지서 교부 · 일반 및 공동주택의 상 · 하수도요금 고지서 및 독촉장(계고장 포함) 교부

③ 기타 부대업무

1.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및 급수업종 변경 업무
2. 수용가 민원사항(검침, 부과착오) 처리 및 통지
3. 상 · 하수도 사용료(체납 포함) 징수 독려

제3조(검침원의 자격) 순창군민으로서 수도검침을 희망하며 사무능력이 있는 63세 이하인 자로서(당해년도 중간에 63세에 달하더라도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함) 관할지역내에 거주하며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자 중 관할지역 읍·면장의 추천(별지 제1호 서식)을 받은 자로 하며, 관할지역에 검침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인접 지역의 희망자를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개정 2023.04.28.>

제4조(결원 시 충원 및 증원) ① 위탁검침원 결원 시 충·증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일반 및 공동일반주택의 신축, 증가로 인한 검침원을 증원하여야 할 때에는 1명당 검침전 수(공동주택 2,000전, 일반주택 800전)를 기준으로 증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수수료의 지급) ① 위탁수수료는 월별로 위탁검침원의 업무처리 건수를 검수하여 위탁수수료를 정산 지급한다. 일반주택은 검침전 1개당 1,000원, 공동주택은 검침전 1개당 500원으로 한다. 또한 공동 주택의 경우 계량기가 옥내에 설치된 곳은 일반주택의 검침수수료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침수수료 외에 검침구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월 50,000원부터 100,000원까지의 교통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검침구역의 특성에 따라 검침전 수의 증감이 될 수 있다.

③ 위탁계약 검침구역 내에(신·증설이나 폐전 등) 검침전 수의 증감이 있을 경우 변경 계약하지 않고 실제 검침전 수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위탁수수료는 매월 고지서 배부 및 익월분 검침 완료 후 위탁검침원(이하 "을"이라 함)이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6조(검침구역별 조 편성 운영) ① 검침구역별(조원 8명 이내)로조를 편성 운영하고, 조원간의 협의 하에 조장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조장은 조원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로 조별 검침구역 내에 업무공백을 사전 예방하고 긴급사유 발생시 상하수도과에 통보하고 조원의 비상연락을 책임진다.

제7조(업무수행 중 책임한계)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의 업무 및 책임 한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을"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제반 관계규정과 "갑"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업무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을"이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3. "을"의 검침원 업무수행 중 발생한 제반 안전사고는 "을"이 책임을 진다.

4.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 본 계약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수용가에 제반 요청사항이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① "을"이 "갑"에게 다음과 같은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을"은 "갑"이 판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고의, 과실 또는 의무의 태만으로 인하여 수용가의 건물 및 시설훼손, 누진요금 등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때
2.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상수도 요금 등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하게 하거나 방조 또는 묵인한 때

② 제1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갑"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양도금지) 위탁 검침원은 어떤 경우에도 상수도 검침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매매, 대여, 상속, 증여, 신탁 등을 하거나 일체의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0조(위탁계약) ① "갑"과 "을" 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약을 체결한 검침원에게는 지정서 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약) ① "을"은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검침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위탁 계약해지 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이행 상대가 본 계약 조항대로 이행 가망이 없다고 "갑"이 인정

할 때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
3. "을"이 "갑"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 기타 협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한 때
4. "갑"이 정당한 이유로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여 "을"이 그 정당성을 인정한 때
5. 상하수도과의 기구 개편, 제도의 변경 기타 부득이한 형편이 있는 때
6. "을"의 업무소홀 및 과실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3회 이상 사유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7. 별지 제5호 서식 위탁검침원 근무평정기준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 위탁검침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매월 실시하여 연말 및 그 전이라도 70점 미만으로 평정되었을 때

③ 계약 해지 시에는 검침업무사항에 지장이 없도록 15일 이내에 제반 서류 및 각 세대 점검사항을 "갑"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갑"은 "을"에게 관계법령 및 직무와 관련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자질향상 및 친절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증금) ① "갑"은 검침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을"로부터 300만원 금액의 보증보험증서(이행지급보증증권)를 예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갑"에게 예치한 보증보험증서(이행지급보증증권)은 계약이 취소 되었때 "갑"과 관련된 채권, 채무관계가 종료된 후에 반환한다.

제14조(신분증 발급) 수용가를 방문하여 검침 시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 대장에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기간) ① 본 위탁검침 계약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갑" "을" 쌍방에서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의 해약 전 까지 변경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 본 계약은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단, "을"은 계약만료 1개월 이전에 보증보험증서(이행지급보증증권)를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며,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추천서는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③ 결원으로 인한 충원 시 계약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상해보장보험 가입) 순창군수는 위탁검침원의 검침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장 보험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인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인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61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승인 고시합니다.

2026. 9. 10.

순 창 군 수



1. 사 업 명 : 인계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 사업목적 : 면 소재지를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촌지역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기초생활 서비스 확충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3. 총사업비 : 4,000백만원(균특 2,800, 도비 360, 군비 840)
4. 사업내용
 - 가. 기초생활기반 : 건강장수 주민활동센터, 건강장수 문화정류장
 - 나. 지역역량강화 : 건강장수 공동체 육성, 건강장수 프로그램, 주민주도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경제 공동체 활성화
5. 주요변경사항 : 보험료 실비 정산에 의한 감액 등
6. 시 행 자 : 순창군수(대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7. 사업기간 : 2022년 ~ 2027년(6개년)
※ 기타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농촌활력과,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가능
(농촌활력과 소도읍개발팀 ☎ 063-650-1758,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 063-650-7065)
8. 시행계획도서 열람장소 : 순창군청 농촌활력과(전화 063-650-1758)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전화 063-650-7065)

순창군 고시 제 2026 - 174호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지방자치법 제1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I. 예산편성 추진경과

- 의회예산(안) 제출일 : 2026. 8. 27.
- 예산의결일 : 2026. 9. 11.
- 주요 증감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제3회추경 예산액	2026년 제2회추경 예산액	증 감	주 요 증 감 내 역	
합 계	623,378	621,112	2,266		
일반회계	605,502	603,236	2,266	○ 지 방 세 입 ○ 세 외 수 세 ○ 지 방 교 부 세 ○ 조 정 교 부 세 ○ 보 조 금 ○ 보 전 재 원	308 74 0 12 1,783 89
특별회계	17,876	17,876	0		

II. 예산규모

- 회계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제3회추경 예산액	2026년 제2회추경 예산액	증 감	증감율 (%)
합	계	623,378	621,112	2,266	0.36
일	반 회 계	605,502	603,236	2,266	0.38
특	별 회 계	17,876	17,876	0	0
상	수 도 사 업	8,997	8,997	0	0
의	료 급 여 기 금 운 영	491	491	0	0
새	농 촌 육 성 기 금 운 영	7,283	7,283	0	0
공	공 주 택	1,100	1,100	0	0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5	5	0	0

2026년 9월 15일

순창군수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39호

순창군 소득개발시험포 경영실습 교육농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소득개발시험포 경영실습 교육농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소득개발시험포를 활용한 경영실습 교육농장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농기술 보급·소득작목 시험 재배를 통한 지역농업인의 전문역량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용어의 규정 (안 제1조~제3조)
- 나. 경영실습 교육농장의 기능 및 농기술학교 운영 규정(안 제4조~제5조)
- 다. 경영실습 교육농장 사용허가 및 사용자 선정 규정(안 제6조~제7조)
- 라. 사용료 및 이행보증금 규정(안 제8조)
- 마. 생산물 귀속 및 사용자 의무 규정(안 제9조~제10조)
- 바. 사용허가 취소, 사용포기 및 손해배상 규정(안 제11조~제14조)
- 사. 현장지도, 준용 및 시행규칙 규정(안 제15조~제17조)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소득개발시험포 경영실습 교육농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 농업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25 순창군 유등면 담순로 1548, 순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 063-650-5123, Fax 063-650-513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업교육팀장 (☎063-650-5123)에게 문의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소득개발시험포 경영실습 교육농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순창군 소득개발시험포 경영실습 교육농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농업인의 전문역량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소득개발시험포를 활용한 경영실습 교육농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 ① 시설의 명칭은 “순창군 소득개발시험포 경영실습 교육농장” (이하 “경영실습 교육농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 ② 경영실습 교육농장은 순창군 구림면 삭골길 56-1 일원에 둔다.
- ③ 군수는 재배작목, 시설현황 및 운영목적 등을 고려하여 소득개발시험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영실습 교육농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개발시험포”란 신품종의 지역 적응성 검정 및 신기술 실증을 위하여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포장을 말한다.
2. “농기술학교”란 농업기술의 습득 및 영농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운영하는 농업기술 교육과정을 말한다.
3. “경영실습 교육농장”이란 소득개발시험포 내에서 영농기술 습득과 농업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설 및 포장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경영실습 교육농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소득개발 작목의 시험재배 및 재배기술 실증
2. 농기술학교 교육과정 운영

3. 경영실습 교육농장의 운영 및 관리
4. 청년농업인 및 귀농인의 영농정착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농기술학교 운영)

- ① 군수는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농기술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제7조에 따른 경영실습교육농장 사용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경영실습 교육농장의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 ①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절차 및 제출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② 군수는 농업인의 영농기술 향상과 농업경영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영실습 교육농장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순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기초영농기술교육 수료자
 2.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3. 3년차 이내 귀농인
 4. 10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자로서 작목전환을 희망하는 농업인
- ④ 제3항에 따른 사용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농업인 등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는 순창군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 ⑤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교육성과 및 포장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사용면적, 사용허가 기준, 선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사용자 선정)

- ① 군수는 사용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의 선정, 사용기간의 연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사용료 및 이행보증금 등)

- ① 군수는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③ 군수는 사용자가 제공받은 농업시설물 및 작목 등의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 납부 방법, 반환 및 상계 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생산물의 귀속 및 처분)

- ① 사용자가 경영실습 교육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사용자의 소유로 한다.
- ② 사용자는 재배 기술 연구를 위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재배기록, 생산량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군수가 정하는 재배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2. 시설물 및 작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하게 하여야 함
- 3. 교육 및 현장지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4. 군수가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5.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 또는 포장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전대하여서는 안 됨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받은 포장(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거나 농장을 방치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이 조례 또는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경영실습 교육농장의 운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②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용 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제공받은 농업시설물 및 작목 등을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의 포기)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경영실습 교육농장의 사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용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포기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종료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장 및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킨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경영실습 교육농장의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사용자의 사망 등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

제14조(손해배상)

- ①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수목, 시설, 장비 또는 그 밖의 재산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손해배상금과 이행보증금을 상계할 수 있으며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③ 손해배상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현장지도)

군수는 사용자의 영농기술 향상 및 경영실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재배기술 지도, 경영컨설팅 및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순창군 소득개발시험포 경영실습교육농장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구분	☐ 신규 ☐ 연장			
영농경력	☐ 예비농업인 ☐ 청년농업인 ☐ 귀농인 ☐ 농업인 (경력: 년)			
실습희망품목				
사용기간	20 . . ~ 20 . . .			
교육이수여부	☐ 이수 (과정명:) ☐ 미이수			
첨부서류	1. 주민등록초본 1부.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해당자) 1부.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순창군 소득개발시험포 경영실습교육농장 설치·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영실습교육농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순 창 군 수 귀 하				

매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순 창 군 수

1. 목 적

- 자연재해 발생 우려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위해 자연재해위
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피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행정예고 기간 : 2026. 8. 31.(월) ~ 2026. 9. 21.(월) (20일 이상)

3. 의견제출 기간 : 2026. 8. 31.(월) ~ 2026. 9. 21.(월) (20일 이상)

4. 공고방법 : 순창군청 홈페이지 (www.sunchang.go.kr) 및 게시판, 읍면 게시판

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 대상지

지구명	위 치	지정개요			지정 사유	비 고
		유형	등급	면적 (㎡)		
매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금과면 동전리 672일원	침수 위험 지구	나	137,650	하천 단면이 부족함에 따라 집중 호우 시 하천의 수위상승과 빠른 유속으로 내수배제가 원활히 되지 않아, 제내지(농경지, 주거지)의 침수 피해 발생	

6. 관련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7.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

순창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留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8. 지구지정 후 정비계획

지구명	사업시기	사업예산 (억원)	사업내용	비고
매우	2027년 이후	355	• 하천 제방 축제 (L=3,720m) • 교량 7개소 및 낙차공/보 3개소 • 배수펌프장 신설(Q= 120m³/min) 및 유수지 설치 (V=12,000m³) • 우수관거 개량(L=2,000m)	

※ 구체적인 공사시기, 내용 및 사업예산은 예산(국·도비) 지원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붙임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순창군청 안전재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제출기한 : 2026년 9월 21일(월)까지

마. 의견제출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또는 팩스

○ 의견서 양식 : [붙임 2] 참조

○ 우 편 : 우) 56039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안전재난과

○ 팩 스 : 063) 650-1859

바. 문의처 : 순창군청 안전재난과 (전화번호 : 063) 650 - 1864)

사.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1. 행정예고 내 용		매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2. 의 견 제 출 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유선:		
3. 의 견							
4. 기 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순창군수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894호

「순창군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숙사 입사자격은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업 사업장 청년근로자로 규정하였으나 제조업 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근로자도 입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사자격) “입사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소재하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일 것”에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비율의 기숙사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근로자가 입사할 수 있다.” 내용을 추가 (안 제4조)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 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 063-650-1312, Fax 650-13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유치 팀장 김극환(☎063-650-1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부,

순창군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호 “입사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소재하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일 것”을 “입사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소재하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일 것,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비율의 기숙사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근로자가 입사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입사자격) 기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입사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소재하는 <u>공장 등록을 완료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일 것</u> 2. (생략)	제4조(입사자격) (현행과 같음) 1. 입사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소재하는 <u>공장 등록을 완료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일 것,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비율의 기숙사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근로자가 입사할 수 있다.</u> 2. (현행과 같음)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 - 895호

「순창군 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이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따른 기준을 반영하고 중복규제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안 제21조의2)

3. 의견 제출

가.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 [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건설과

(☎ 063-650-1827, Fax 650-18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건설과 도시계획팀(☎063-650-1827)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차장 및 태양광 발전시설”을 “폐차장”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영 별표1의2제2호 가목(3)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순창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의2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군수는 영 별표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폐차장 및 태양광 발전시설</u> 설치 허가를 제한한다. <u>다만, 순창군민(개발행위허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계속해서 5년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을 기준으로 등기부상 소재지 및 법인의 대표자와 등기임원 전원이 순창군에 계속해서 5년이상 주민등록을 둔자를 말한다)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7호)를 제외한 각 호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완화적용 할 수 있다.(준공 전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 1.~ 8. (생략) <u>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u>1. 자가소비용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 또는 지원하여 설치하는 경우</u>	제21조의2(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 ----- ----- ----- <u>폐차장</u> ----- ----- -----, <단서 삭제> 1.~ 8. (현행과 같음) <u>② 군수는 영 별표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발전설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순창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u><삭제></u>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농공단지포함)내의 공장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삭 제>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 상부에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일로부터 3년(동식물관련시설은 5년)이 경과하여야 하고, 경과 기간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식물관련시설의 경우에는 영농기록(생산·판매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4. 준공된 발전사업 부지 내에서 공작물(발전시설)을 재시공할 경우	<삭 제>
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순창군민(개발행위허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계속해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이 건축물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896호

「순창군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순창군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숙사 입사자격은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업 사업장 청년근로자로 규정하였으나 제조업 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근로자도 입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사자격) “입사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소재하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일 것”에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다만, 일정 비율의 기숙사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근로자가 입사할 수 있다.” 내용을 추가 (안 제2조제2호)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 경제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읍 경천로33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 063-650-1312, Fax 650-13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경제교통과 기업유치 팀장 김극환(☎063-650-13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순창군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순창군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입사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완료한 순창군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를 “입사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완료한 순창군 소재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다만, 일정 비율의 기숙사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근로자가 입사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입사자격)①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입사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완료한 순창군 소재 <u>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u> ② (생략)	제2조(입사자격)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입사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완료한 순창군 소재 <u>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 다만, 일정 비율의 기숙사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근로자가 입사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921호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조례에 옥천인재숙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재)순창군옥천장학회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나. (재)순창군옥천장학회 사업범위에 ‘순창군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사업’ 및 ‘미래이음센터 운영 및 관리’를 추가하여 학생 교육복지 향상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5조(사업)제3호 신설
 - － 옥천인재숙 운영 및 관리
- 나. 제5조(사업)제3호와 제4호 제5호를 각 제4호와 제5호로 제7호로 변경
- 다. 제5조(사업)제6호 제7호 신설
 - －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사업

- 미래이음센터 운영 및 관리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행정과

(☎ 063-650-1238, Fax 063-650-12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행정과 주무관(☎063-650-1238)에게 문의바랍니다.

붙임 :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옥천인재숙 운영 및 관리

제5조 제3호, 제4호 제6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4.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사업
5.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8.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제5조 제6호,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사업
7. 미래이음센터 운영 및 관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 1. ~ 2. (생략)	제5조(사업)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 옥천인재숙 운영 및 관리</u>
<u>3.</u> (생략) <u>4.</u> (생략)	<u>4.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사업</u> <u>5.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u>
<u><신 설></u>	<u>6.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사업</u> <u>7. 미래이음센터 운영 및 관리</u>
<u>5.</u> (생략)	<u>8.</u> (현행과 같음)

[별지 서식]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건 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 고
	찬성	반대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923호

「순창군 미래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미래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역 학생들에게 외국어 능력 향상과,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대도시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미래이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위치 (안 제1조~2조)
- 나. 센터의 기능, 이용대상 및 수강료(안 제3조~제4조)
- 다. 이용시간, 운영 및 사업비 출연 (안 제5~6조)
- 라.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지도감독(안 제7조~제8조)
- 바. 시행일, 다른법령과의 관계 (부칙 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미래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

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행정과

(☎ 063-650-1236, Fax 063-650-12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행정과 주무관(☎063-650-1236)에게 문의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미래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순창군 미래이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관내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진로·진학 지원을 위하여 순창군 미래이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순창군 미래이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145-8에 둔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진로·진학 상담 및 정보 제공
3. 진로·진학 관련 행사 개최
4. 스터디카페 등 학습공간 운영 및 지원
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순창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등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학생들의 관내 학생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 및 지역주민
2. 순창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제5조(이용료) 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재비·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실비는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운영시간은 이용자 편의와 교육적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

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운영주체 및 사업비 출연)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순창군옥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사업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장학회에 사업비를 출연하여 운영하는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에서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군수는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장학회에 사업 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지도·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입 법 예 고 문

순창군 공고 제2026-926호

순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5일

순 창 군 수

순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상위 법령 개정 및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별표 등 관련 조항을 현행화하여 인사 행정의 통일성과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나. 재난·안전 관리 업무 및 대민 접점의 격무·기피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함으로써,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책임 있는 공직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
- 다. 그 밖에 현행 인사규칙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정비하여 인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 통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나. 시험위원 위촉 기준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다.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의2)
- 라. 민간근무경력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요건(경력기준) 완화 및 단축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마.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의2)

- 바. 전직시험 면제 관련 직군 명칭(과학기술직공무원) 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사. 특별승진임용기준(격무·기피 업무 등) 구체화 및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아.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근거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의4)
- 자. 자격증 및 응시요건 등 관련 별표 기준의 인사규칙 표준안 반영 및 최신화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가. 순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창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56039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순창군청 행정과

(☎ 063-650-1224, Fax 063-650-1229 또는 순창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un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무방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행정과 주무관(☎063-650-1224)에게 문의바랍니다.

붙임 순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후단 중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3년이상이어야”를 “3년이상(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8에서 정하는 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어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
2. 고도의 전문지식·신기술을 활용하는 융·복합 영역으로 과거 경력 반영 필요성이 낮은 경우
3.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적어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 보다 적은 경우 등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

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17조제4항 중 “기술직공무원”을 “과학기술직공무원”으로 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근무경력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무경력의 종류는 [별표 16]과 같다.

별표2, 별표4, 별표5의2, 별표6, 별표7, 별표7의4, 별표8, 별표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난안전 분야 가산점 부여에 따른 경과규정) 제25조의4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때 이 규칙 시행일 이전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격무·기피 부서로 선정된 민원업무 가산점 부여에 대한 적용례) [별표 16] 신설에 따른 격무·기피 부서로 선정된 민원업무 가산점 부여는 2027년 하반기에 실시하는 정기평정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 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u>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u> 해당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연령) -----		

		-----		18세 이
		<u>상이어야</u> -----		
		-----.		
1. 7급 이상 : 20세 이상		<삭 제>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삭 제>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u>하되,</u> <u>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를 판단</u> <u>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u> <u>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제12조(시험위원) ① -----		

		-----.		

		<u>한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② (생략)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u>제1항의</u> <u>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u> <u>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u> <u>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u>		③ ----- <u>제2항</u> ----		

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②·③ (생략)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직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②·③ (현행과 같음)

④ -----

3년이상(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8에서 정하는 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어야 -----
----- . ----.

1.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

2. 고도의 전문지식·신기술을 활용하는 융·복합 영역으로 과거

<신 설>

⑤ ~ ⑪ (생 략)

<신 설>

경력 반영 필요성이 낮은 경우

3.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적어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 보다 적은 경우 등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⑤ ~ ⑪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

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
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
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
 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
 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
 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
 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
 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
 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
 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
 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③ (생략)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와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과학기술
직공무원-----

-----.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

-----.

1. ~ 3. (현행과 같음)

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
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
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
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4(근무경력 가산점) 「지방
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하
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무
경력의 종류는 [별표 16]과 같다.

[별표 2] <개정 2019.12.26., 2021.06.15.>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4조제5항, 제6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

직렬	직류	계급	연 구 관 · 연 구 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국가유산관리학 ,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 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국 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국 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	편 사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	기 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 기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 자		
	금 속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 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공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학		
	산업경영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물 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계급		연구관 · 연구사
직렬	직류	
농업연구	작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환경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원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축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식품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녹지연구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조경	
수의연구	수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계급		연구관 · 연구사
직렬	직류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	의 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약 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	토 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건 축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 연구	안전관리	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재난관리	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비 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별표 4] <개정 2019.12.26., 2021.06.15., 2021.12.27.>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관련)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 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 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 종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 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 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 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 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 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5의2] <개정 2019.12.26., 2021.06.15., 2021.12.27.>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데 이 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설비보전
	농업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산업안전, 교통, 설비보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증기운전, 굴착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 선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선체설계,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 산업기사 : 품질경영 기능사 : 자동화설비, 전자, 임베디드, 전자카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 종자, 원예, 벼식물,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임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선체 , 조선의장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선체 , 조선의장 ,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 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 산업계측제어 , 전자응용 , 정보통신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 전자 기사: 전기 , 전기공사 , 전자 , 무선설비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해양공학 ,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 전기공사 , 전자 , 무선설비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 전자 ,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
항 공	일반항공	기 술 사 : 항공기관, 항공기체 기 사 : 항공 산업기사 : 항공
	정 비	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건 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지 적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 웹디자인개발
	방재안전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통신기술 :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송기술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기술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 전자 , 정보통신 ,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조리	기능장 : 조리 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위생	기능사 :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 설비보전 산업기사 : 설비보전 기능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기계정비, 조경

비 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 경쟁임용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공 업	일반전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일반기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기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물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물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물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 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위생사(12) 직업치료사(12) 사(12) 안경사(12) 원소취급사(특수) 방사선사(일반)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보건정보관리사(8) 사(8) 서사(8) 물리치료사(8) 치과위생사(8) 직업치료사(8) 보건정보관리사(8) 안경사(8) 원소취급사(일반) 방사선사(일반)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보건정보관리사(5) 사(5) 서사(5) 물리치료사(5) 치과위생사(5) 직업치료사(5) 보건정보관리사(5) 안경사(5) 원소취급사(일반) 방사선사(일반)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2) 보건정보관리사(2) 사(2) 서사(2) 물리치료사(2) 치과위생사(2) 직업치료사(2) 보건정보관리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보건정보관리사 사 서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직업치료사 보건정보관리사 안경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 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한약사(7)	약사(3) 한약사(3)	약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기 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 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기 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 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기 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기 정비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운장 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운장 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운장 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운장 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운장 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디 자 인	건축사(5)	건축사			
숙 기	숙기			한글숙기 1·2급(5)	한글숙기 1·2·3급(2)	한글숙기 1·2·3급
위 생	위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사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 고 :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렬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자격증 취득 전의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별표 6] <개정 2019.12.26., 2021.06.15.>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과 전직을 위한 자격증 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제3항 관련)**

1. 연구직 공무원

직렬 \ 계급	직류	연 구 관	연 구 사
공업연구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승강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승강기)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기사(섬유, 의류)
	화 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식품)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식품, 화학분석)
	화 학		
	산업경영	기술사(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농업연구	물 리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약사
	농업환경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기상예보) 약사(7)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유기농업) 약사, 위생사(5)
	작물보호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 3. 27. 이전 취득한 것을 말함.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렬	직류						
농업연구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농 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식품 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 업	기술사(조정,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토양환경)		
	조 경						
수의연구	수 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보건연구	의 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 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계급		연 구 관	연 구 사
	직류			
환경연구	환	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	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기사(방재)
	재난관리			기사(방재)

비 고 : 1. 직류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기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력을 계산할 때 자격증 취득 전의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 계급	직류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작 물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산업곤충	기술사(생사)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공학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어촌지도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기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안의 기간(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력을 계산할 때 자격증 취득 전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 <개정 2019.12.26., 2021.06.15., 2021.12.2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숙 기	숙 기	한글숙기 1급	한글숙기 1·2급	한글숙기 1·2·3급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 능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진기, 능사)
	농업기계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산업안전, 교통, 설비보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기능사(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기능장(전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전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자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يز,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업	가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식품)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능장(산림)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능장(산림)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어 로				
	해양교통 시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선체, 조선의장,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	방 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간호사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전문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응급구조사2급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능장(산림) 기사(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수 질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대 기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폐 기 물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조 중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디자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방송통신	통 신 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 통신설비)	산업기사(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무선설비,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컴퓨터시스템, 무선설비, 정보처리)	
	전송기술			
	전자통신 기 술			

직렬 \ 계급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u>조경, 설비보전</u>)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u>조경</u>)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경)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의4] <개정 2019.12.26., 2021.06.15., 2021.12.27.>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능 사 :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 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 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설비보전	
	농업기계		

공 업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 능 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산업안전, 교통, 설비보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착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톨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증 가 산 비 율 :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조 선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 능 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공 업	전 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품질경영 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자동화설비, 전자, 임베디드, 전자캐드	
	원 자 력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공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 사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 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 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 의사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 의사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 능 사 : 산림,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 조경, 산림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 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해양,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 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 설	기 술 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전자,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보건교 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 사2급, 보건교육 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 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영 양사, 위생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 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 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 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환 경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 분야로 한정한다), 정수시설운영기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기사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정수시설운영관리사3급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수도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 축	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 설 계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디자인	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개발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술	기 능 사 : 전자,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설비보전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설비보전, 조경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 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설비보전	
농촌지도	농업공학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공업연구	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공업연구	금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학	기술사 : 화학, 세라믹, 화학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학,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학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리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작물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작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정,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정,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정, 식품,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정,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정,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정,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산업곤충	기 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농촌지도	산업곤충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농촌지도	농촌생활	기 사 : 섬유,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영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촌사회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자동화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농업연구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안전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촌지도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식품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정, 종자, 산림, 농화학	
	조 경	기 사 : 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촌지도	임 업	산업기사 : 조정,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 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농촌지도	가축위생	산업기사 : 축산	
해양수산 연구	해양환경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수산자원		
어촌지도	어 촌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 연구	수산양식	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 기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공중보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식품, 의공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 사 2급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 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 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 측정분석사
		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 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 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 방지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기 사 : 방재	
	재난 관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8] <개정 2014.4.10.>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4조제4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2급 · 연구관 지도관	3급 · 연구관 지도관	4급 · 연구관 지도관	5급 · 연구관 지도관	6급 · 연구사 지도사	7급 ·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경 찰 공 무 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경 감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준 위 위 사	상 중 사 사	하 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교원포함)	대학(교육대학 · 전문대학 포함)교원	교 수 (3년이상)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 임 사 강			
	초 · 중 · 고등학교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24호봉 이 상	16호봉 이 상	12호봉 이 상	11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 상	11호봉 이 상	7호봉 이 상	6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 상	13호봉 이 상	9호봉 이 상	8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		9호봉 이 상	6호봉 이 상	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						6급 이 상	7급	8급	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사 학 위 소 자 학 위 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 비 고 : 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8에서 정하는 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별표 11] <개정 2014.4.10., 2021.06.15.>

**연구직 · 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17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공업연구	기 계	공 업	일 반 기 계
			농 업 기 계
			기 계 운 전
	전 기		일 반 전 기
	전 자		전 자
	금 속		금 속
	섬 유		섬 유
	화 공		화 공
	화 학		
	물 리		-
농업연구	작 물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농 업 환 경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작 물 보 호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식 물 검 역
	농 업 경 영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농 업 경 영
	산 업 곤 충	농 촌 지 도	잠 업
	원 예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원 예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업연구	생 명 유 전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생 활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촌 사 회
	축 산	농 촌 생 활	농 촌 생 활
		축 산	축 산
	농 공	농 촌 지 도	축 산
		공 업	농 업 기 계
		시 설	농 업 토 목
		농 촌 지 도	농 업 기 계
	농 촌 지 도	농 업 토 목	
녹지연구	임 업 경	임 업	전 직 류
	농 촌 지 도	임 업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수 의	수 의
해양수산연구	해 양 환 경	환 경	수 질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자 원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양 식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공 학	해 양 수 산	어 로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가 공	어 촌 지 도	어 촌
	수 산 경 제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촌 지 도		어 촌	
보건연구	의 학	의 무	일 반 의 무
			치 무
	약 학	약 무	약 무
	공 중 보 건	보 건	보 건
식 품 위 생		식 품 위 생	
환경연구	환 경	환 경	전 직 류
시설연구	토 목	시 설	일 반 토 목
	건 축		농 업 토 목
방재안전연구	안 전 관 리	방 재 안 전	건 축
	재 난 관 리		방 재 안 전

2. 지도직공무원

지 도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농 촌 지 도	작 물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업 연 구	작 물
			작 물 보 호
			농 업 환 경
			농 업 경 영
			원 예
	농 업 경 영	농 업 연 구	농 업 경 영
	임 업	녹 지	전 직 류
		녹 지 연 구	임 업
			조 경
	산 업 곤 충	농 업 연 구	산 업 곤 충
	원 예	농 업 연 구	원 예
	축 산	농 업	축 산
		농 업 연 구	축 산
	가 축 위 생	수 의	수 의
		수 의 연 구	수 의
	농 촌 사 회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농 업 공 학	공 업	농 업 기 계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업 토 목	시 설	농 업 토 목
		농 업 연 구	농 공
	농 촌 생 활	농 업 연 구	농 촌 생 활
어 촌 지 도	어 촌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어 로
		해 양 수 산 연 구	전 직 류

[별표 16] <신 설>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제25조의4 관련)

구 분	부여기준	가 점	비고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난안전총괄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 안전관리법」 10.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1.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월 0.05점 (가산점은 누적하여 총 0.7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격무·기피 민원업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 중 군수가 추천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격무·기피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실무자	월 0.05점 (가산점은 누적하여 총 0.7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비 고>

1. 근무경력 가산점은 이중으로 부여할 수 없으며, 이중 가산점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한 가지 항목에만 반영한다.
2. 격무·기피 민원업무 선정 시, 민원 건수, 업무난이도, 직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별지 서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건	비고
	찬성	반대		